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3일, 이정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6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문의원)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